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S&Q Plus. Inc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625] www.ohcoffeelab.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11.06] ohcoffeelab@snqplus.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2.28]

오! 커피랩(OH! COFFEE LAB)

정 보 공 개 서

(주)에스앤큐플러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주)에스앤큐플러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41, 지성빌딩 3층
- ※ 대표전화: 1688-9519
- ※ 대표팩스: 02-529-8816
-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1688-9519)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에스엔큐 플러스	오! 커피랩 외 1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41, 지성빌딩 3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 8. 22	2012 .8. 22.	임인엽	1688-9519	02-529-8816
	법인등록번호	110111-4943422	사업자등록번호	106-86-8834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임인엽	오! 커피랩 외 1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41, 지성빌딩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인엽	1688-9519	02-529-8816
사내이사	임미자	오! 커피랩 외 1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41, 지성빌딩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인엽	1688-9519	02-529-8816
사외이사	오의성	오! 커피랩 외 1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41, 지성빌딩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인엽	1688-9519	02-529-8816
감 사	김재충	오! 커피랩 외 1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41, 지성빌딩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인엽	1688-9519	02-529-8816
계열회사	(주)디디에프 엔비	디디치킨 외 1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41, 3층(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인엽	02-529-8800	02-529-8816
	법인등록번호	110111-5416783	사업자등록번호	264-81-3418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오! 커피랩]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오! 커피랩	5가지 맛 아메리카노 연구소
상 호	오! 커피랩 OO점	
상표(서비스표)		출원(국제등록)번호 : 4020230123814 5가지 맛 아메리카노 연구소 OH! COFFEE LAB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093,815	1,951,432	142,382	3,716,941	-177,992	-171,806
2022년	1,114,860	1,628,096	-513,236	3,358,707	-701,567	-766,755
2023년	1,037,961	2,550,810	-1,512,849	4,329,901	-684,848	-935,137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첨부

2023년,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1년,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위에 기입한 1)의 매출과 같음.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임인엽	대표이사	2024. 11. ~ 현재	사내이사	토프레소 외 1개 가맹본부 대표
		대표이사	2024. 10. ~ 현재	(주)디디에 프엔비 사내이사	디디치킨 외 1개 가맹본부 대표
	임미자	사내이사	2024. 11. ~ 현재	사내이사	운영 관리
		사내이사	2024. 09. ~ 현재	(주)에이치 씨지 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사내이사	2024. 10 ~ 현재	(주)디디에 프엔비 사내이사	운영 관리
	오의성	사외이사	2024. 11. ~ 현재	사외이사	영업 및 사외업무
		감사	2024. 10. ~ 현재	(주)디디에 프엔비 감사	회계,자금
	김재충	감 사	2024. 11. ~ 현재	감 사	회계,자금
		사내이사	2024. 10. ~ 현재	(주)디디에 프엔비 사내이사	운영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22

※ 원천징수신고 인원 총24명중 상근임원이 2명 포함되어 있어 직원 수는 22명입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에스앤큐 플러스	토프레소	2012.09.01.~현재	토프레소(등록번호: 20080100482)라는 커피 전문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디디에프 엔비	디디치킨	2023.05~현재	디디치킨(등록번호: 20080200132)이라는 치킨 전문 가맹사업 경영
		디디엔짬닭	가맹사업 시작 예정	디디엔짬닭(등록번호: 20210502)이라는 한식 전문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5가지맛 아메리카노 연구소 OH! COFFEE LAB (상표권)	지정 매장에 한해 서비스표 사용	2023. 07. 12 출원	40-2023-0123814	(주)에스앤큐 플러스	2034. 01. 31
		2024. 01. 31 등록	40-2148286-0000		
오커피랩오 플바 (상표권)	지정 매장에 한해 서비스표 사용	2023. 08. 02 출원	40-2023-0138874	(주)에스앤큐 플러스	공고
		진행중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일부 상표(출원 상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오! 커피랩 가맹사업 현황

1. 오! 커피랩을 시작한 날: 2023년 11월 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3년 8월 17일)

2. 오! 커피랩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스앤큐 플러스	오! 커피랩	임인엽	2024.11.06.~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41, 지성빌딩 3층
(주)에스앤큐 플러스	오! 커피랩	윤다예	2024.09.04~ 2024.11.0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5길 31, 비동 2층(신당동, 종하빌딩)
(주)에스앤큐 플러스	오! 커피랩	고경진	2023.08.17.~ 2024.09.04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현로 6길 55, 3층(양재동, 삼릉빌딩)

3. 오! 커피랩 업종

영업표지	업종	
오! 커피랩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음료, 샌드위치, 디저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오! 커피랩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2	1	1
서울	-	-	-	-	-	-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오! 커피랩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1	-	-	-	-	1

6. 오! 커피랩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오! 커피랩]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 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에스앤 큐플러스	토프레소	20080100482	커피	184/0	159/0	129/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디디에 프엔비	디디치킨	20080200132	치킨	118/0	114/0	101/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디디에 프엔비	디디엔점닭	20210502	한식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오! 커피랩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2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 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 체	-	해당없음	-	-	-	-	-	
서울	-	해당없음	-	-	-	-	-	
부산	-	해당없음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과 일부 매장 실제 배달 매출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오! 커피랩은 2023년 평균 매출을 산정하기 위한 가맹점수(1개)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영업일수(주 6일 영업의 비율이 30% 정도 됨) 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매출과 같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오! 커피랩]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오! 커피랩]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	76일

※위 평균 영업기간은 가맹점의 최초 계약일로부터 바로 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사업자별 평균 영업기간은 아님)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바로 전 사업연도의 당사가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이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수단	내용	기간 및 일자	지출금액 (단위:천원/VAT미포함)
광고/판촉	(비공개)	2023.1.1.~2023.12.31	(비공개)
합계	29,359		

*위의 광고/판촉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촉비와 광고선전비를 기재한 것으로서, 이 금액은 (주)에스엔큐플러스 및 토프레소 브랜드 및 광고 판촉 활동을 위해 소요된 총 비용으로 오! 커피랩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브랜드 판촉 외 가맹점 개별 판촉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손익계산서상 판촉비로 기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중소기업은행(IBK 기업은행) 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http://kiup.ibk.co.kr	1588-2588
우체국		http://epostbank.go.kr	1588-19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행]

귀하는 기업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맹금을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부가 서비스” 아래의 ‘가맹금 인터넷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에스엔큐플러스의 사업자등록번호 106-86-88346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체국]

귀하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가맹금을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맹금 예치는 위의 기업은행과 동일합니다.

[가맹금 인터넷 예치 서비스 이용 절차]



[프랜차이즈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이용계약 방법]

- 

1 로그인
인터넷뱅킹 가입 후,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2 약관동의
고객유형을 **가맹점사업자**로 선택하신 후, 프랜차이즈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 

3 등록정보 입력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고객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4 가입완료
가입 즉시, 프랜차이즈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주)중소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입금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프랜차이즈 보증보험증권 혹은 보증보험증권을 출력할 수 있는 사서함번호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http://egis.sgic.co.kr>)에서 보험증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에스엔큐플러스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개월 소요

※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안내

- 보험계약자 : 가맹본사
- 피보험자 : 가맹점사업자
- 보험책임 개시 : 가맹계약 체결일과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보험책임 종료 :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보증내용 : 가맹사업계약에 따른 예치가맹금 반환보증
- 보험금 청구 : 보험계약자가 가맹법률상의 예치가맹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 후 채무이행의 서면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방법 :
 - 1) 보험증권 발급 지점 또는 보상지원단에 제출(우편접수 가능)
 - 2)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보상서비스 메뉴(MY보상)를 통해 인터넷 청구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오! 커피랩]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차에 소요되는 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당사가 정한 필수 품목 외 당사와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오! 커피랩]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94,730천원(표 I ⅡⅢ 참고, 부가세 포함, 33.0㎡ 기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표: I)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표: Ⅱ)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시설/집기 비용(표: Ⅲ)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기타 비용(표: Ⅲ)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오! 커피랩]의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표: I)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입비	2,2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 및 개점을 위한 비 용 소요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 금을 공제
개점관리비	3,300		인테리어공사 시작 3일 이전에 계약 해지	공사를 개시한 경우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 금을 공제
개점전교육비	3,300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계약이행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

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표: II)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 보증금(현금)	2,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물품 대금 미지급 - 계약종료 시 사인물 미철거 - 로열티 미지급 - 광고/판촉비 미지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800
가입비	2,200
개점관리비	3,300
개점전교육비	3,3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1. 물품 구입 및 임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III)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단위면적: m²)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금액	면적 3.3m ² 당			
총계		83,930	8,393			
필수설비 (정착물)	(주)에스엔큐 플러스	36,520	3,652	발주 시 50% 설치 1일 이전 50%	발주 전 계약취소(발주 후에는 소요비용 제외)	○기본 설비 기준 ○매장 규모에 따라 사이즈 및 수량, 금액 변동 가능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22,000	2,200	공사 전:40% 공사 중:40% 공사 완료 후:20%	공사 전 계약취소	○별도계약 ○33m ² (약 10평) 기준 ○3.3m ² 늘어날 때마다 2,200천원 추가부담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금액	면적 3.3㎡당			
간판/사인물		5,500	550			○규격(4m×1m) 초과 시 ㎡당 660천원 추가
파사드		5,500	550			○전면 4m 기준
도면비	(주)에스앤큐 플러스	2,750	275	공사전:100%	도면 작업 전 계약 취소	○가맹점 전용, 디자인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에스앤큐 플러스	3,300	330	물품 공급 이전	상품 미공급 시	○매장 규모에 따라 변 동 가능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주)에스앤큐 플러스	5,720	572	영업 개시일 물품공급 이전	개점 전 계약 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POS 및 서비스기기 (주방 / 운영)
		2,640	264			○가구비 ○33㎡(약 10평) 기준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는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제공 및 공사 검수비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비 3,300천원과 검수비 3.3㎡당 165천원을 도면 작업 시작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지정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도면비 2,750천원이 발생합니다.
- ※ 가맹점의 위치가 서울, 경기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지방경비가 추가 됩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33.0㎡(약 10평) 기준이며, 기본 취급메뉴는 커피, 음료, 오피바, 디저트, 샌드위치이며,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기 3.3㎡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로 나눈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실제 크기에 따라 정률로 금액이 가감되지는 않습니다.
-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 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경과 후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부터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70%

*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직접 물색, 선정한 입지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담당자가 점포 개설 가능한 면적 여부 및 기타 입지를 현장 실사(점포위치, 점포형태, 배후 상권, 유동인구 파악) 후 입점 타당성 분석, 이후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입지를 결정합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오! 커피랩]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실내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전기증설, 냉난방기, 전면 창(접이문), 테라스, 어닝, 외부공사, 급배수 배관공사(외부), 돌출간판, 화장실공사 등.
- ※ 매장의 메뉴선택과 매장 크기에 따라 집기의 사양 및 품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포스(POS), 키오스크, DID, KDS 기기의 경우 구매이며, 월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설치비는 구매 시 포함입니다.

9) 가맹금 분납 제도

해당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이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8.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주)에스앤큐 플러스	행사별로 분담			광고 집행 후	
판촉분담금	(주)에스앤큐 플러스	행사별로 분담			행사 종료 후	
경영지도에 따른 훈련요원 파견 비용	(주)에스앤큐 플러스	(165)	파견 실시 5일 이전	파견 실시 전	파견 완료 후	1일 훈련요원 파견에 대한 비용으로 파견 내용 및 매장 상황에 따라 협의 결정, 숙식비 및 교통비 별도
로열티	(주)에스앤큐 플러스	월 220	매월 말일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교체·보수 범위에 따라 차등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발주 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교체·보수 범위에 따라 차등	교체·보수 후 5일	교체·보수 전	공사 완료 후	교체·보수 필요 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이내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54 페이지 참조
POS 관리비	가맹본부	월 36.3	매월 지정일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월 금액은 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키오스크	가맹본부	월 1.1	매월 지정일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월 금액은 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ID	가맹본부	월 1.1	매월 지정일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월 금액은 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KDS	가맹본부	월 1.1	매월 지정일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월 금액은 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매장음악 서비스	협력업체	월 9.9	매월 지정일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49.5㎡기준으로 매장 규모에 따라 차등 비용 발생
고객관리 시스템	가맹본부	월 5.5	매월 지정일		후불 형식으로 반환 불가	가맹본부 수납 후 관리업체 일괄 지급 업체 변경에 따라 금액 변동 될 수 있음
전용앱 /오더프로그램	가맹본부	월 33.0	매월 지정일			도입 시 당사와 협의 금액 변동 가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매장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가맹본부가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맞추어 보고해야 한다.

※ 로열티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로열티를 면제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없음: 당 사는 2023년 말 기준 가맹점 1개 운영(6개월 미만)이 되어 차액가맹금 산출이 불가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매장 청결	매장 내 위생상태 점검	수시	문의: 운영지원팀 (1688-9519)
시설 및 장비 청결	기기장비 점검, 소모품 교체 점검	"	"
친절도	친절도 점검	"	"
필수물품 및 레시피 준수 개별메뉴판매본부	필수물품 사용 확인 점검 레시피 준수 여부 확인 점검 개별 메뉴 판매 확인 및 점검	"	"
식품위생법 및 기타 법령 준수	식품위생법 및 기타 법령 준수 점검	"	"
지정복장 착용	근무자의 지정복장 착용 점검	"	"
포스 및 음악서비스 사용	포스 사용 및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점검	"	"
지정 고객 관리 프로그램 및 오더프로그램 사용	고객 관리 프로그램 및 오더 프로그램 사용 여부 점검	"	"
비인가 홍보물 부착	매장 내 홍보물, 사인물 점검	"	"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기기 설치 운영	매장 내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기기 설치 운영 점검	"	"
재고 관리	해당 없음	-	"
회계 처리	해당 없음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기 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영업표지가 부착된 상품과 기타 점포설비 등은 가맹본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본 계약기간 중 귀하가 운영하는 오! 커피랩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예치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 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가맹본부에 완제하여야 한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개점전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귀하는 아래 각항의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영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본부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매뉴얼, 레서피 등 모든 관계 서류를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의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등 이와 유사한 문자 또는 의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표, 상호 등 제반장치, 장식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고객이 브랜드를 인지할 수 없도록 간판면의 자국, 이미지, 문자 형태의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하며, 간판, 상호, 상표, 이미지, 로고의 부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채무이행의 완료 및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철거 내지 제거를 확인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계약이행 보증금을 상환 시에 가맹본부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 경우는 선공제 후 그 차액을 지급하며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철거 및 제거가 지연되고 가맹점사업자가 연락두절, 의무이행회피 등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직접 철거 및 제거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미수금을 선 공제 후 남은 차액금에서 제외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냉동 냉장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며, 박스단위 제품은 개봉 시 반품이 불가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오! 커피랩]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원부재료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에 대한 목록은 별지 2 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수익향상을 위해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없음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해당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커피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승인되지 않은 메뉴를 추가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 커피랩은 추가 개별 메뉴 진행이 불가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귀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당사에서 출시한 메뉴를 취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조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새로운 메뉴 출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귀하에게 지도·권유할 수 있으며 유사한 제품 취급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정한 전용상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손해가 되는 개별 상품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제품 판매 시 당사가 정한 용기와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커피랩]

[2023년 8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매장 입지에 따라 위에 표시된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표준가격 이외에 사이즈 업으로 인한 판매 가격은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매 가격을 권장하고 있으며 별도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매장 입지에 따라 위에 표시된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모바일 쿠폰(메뉴권)의 경우 어느 한 매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할 수 없으므로 위에 표시된 표준 권장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메뉴권)의 경우 매장 판매가로 인한 차액은 반환하거나 추가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에스프레소 커피 및 샌드위치, 주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토프레소, 오! 커피랩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특수 상권일 경우	일반 상권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가맹계약서 별지에 지도로 표시
일반 상권일 경우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별지에 지도로 상권 설정, 별도로 지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00m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호텔, 공항,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종합병원 등과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 일반 상권이라 하더라도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나 고가도로로 구분되어 동일한 상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오! 커피랩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오! 커피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

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가맹점사업자가 배달을 통한 영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먼저 알리고 배달 지역에 속한 인근 매장에서부터 동의를 얻은 뒤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배달로 인한 분쟁 발생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해당사항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해당사항 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오! 커피랩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7조 1항 1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27조 1항 2조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7조 1항 3조
○ [오! 커피랩]만의 일관된 품질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원·부재료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7조 1항 4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7조 1항 5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7조 1항 6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 · 부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경우	25조 1항 1호
○ 부패 · 변질된 원 · 부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25조 1항 2호
○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원·부재료를 사용한 경우	25조 1항 3호
○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통 메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하지 않는 경우	25조 1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25조 1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5조 1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25조 1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5조 1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의 표준화 및 서비스 규정을 위반한 경우	25조 1항 9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7항을 위반하여 회계자료 통지 및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5조 1항 10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5조 1항 11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제9항을 위반하여 공급품을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25조 1항 12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5조 1항 13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25조 1항 14호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행위를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25조 1항 15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25조 1항 16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제1항에서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가맹본부의 서면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5조 1항 17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제5항의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5조 1항 18호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25조 1항 19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위치변경을 한 경우	25조 1항 20호
○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들이 근무복장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2회 이상 시정통보를 받은 경우	25조 1항 21호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점포소재지, 점포의 규모 등 가맹점의 표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5조 1항 22호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에 개점을 하지 못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25조 1항 23호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원·부재료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25조 1항 24호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훈련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경우	25조 1항 25호
○ 가맹점사업자가 메뉴 임의변경, 필수품목 미사용, 지정거래처 임의변경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25조 1항 26호
○ 가맹점사업자가 매뉴얼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영업의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의 브랜드 가치, 이미지 훼손 및 영업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25조 1항 27호
○ 가맹점사업자가 신메뉴 판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5조 1항 2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5조 1항 29호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5조 1항 30호
○ 가맹점사업자가 기타 본 계약의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조 1항 3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28조 2항 1호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28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8조 2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8조 2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8조 2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28조 2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8조 2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28조 2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28조 2항 9호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재계약 시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신규 계약서를 통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계약 기간 중 계약 수정에 동의 또는 합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으나, 계약 만료일로부터 180일부터 90일 사이의 기간동안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함으로써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운영지원팀 (1688-9519)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개점전교육비, 로열티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7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체결(3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행사인 면담 포함, 7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및 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1년간은 가맹점사업자의 종전 영업지역(동일장소)에서 당사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커피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업종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1688-951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오! 커피랩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본부가 강제하는 종업원 수는 없으나 영업장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비정기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및 배송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운영지원팀	등기 배송일 경우 서명 생략
시설 및 장비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및 배송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운영지원팀	"
필수물품 사용여부 레시피 준수 여부	담당자 매장 방문 → 필수물품 사용 확인, 레시피 준수 여부 확인 → 관리표 작성 및 배송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운영지원팀	"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및 배송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운영지원팀	"
식품위생법 및 기타법령 준수	담당자 매장 방문 → 준수 확인 → 관리표 작성 및 배송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운영지원팀	"
지정복장 착용	담당자 매장 방문 → 준수 확인 → 관리표 작성 및 배송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운영지원팀	"
포스 및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사용 확인 → 관리표 작성 및 배송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운영지원팀	"
비인가 홍보물	담당자 매장 방문 → 홍보물 확인 →	비정기적	본사	"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부착	관리표 작성 및 배송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운영지원팀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기기 설치 운영	담당자 매장 방문 → 영업/운영 확인 → 관리표 작성 및 배송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비정기적	본사 운영지원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오! 커피랩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 및 판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및 지역별 광고	브랜드광 고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매월 20일까지 오만원(\55,000 / 부가세포함)을 당사에 광고비 또는 판촉
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광고 또는 판촉 분담금을 경영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광고 또는 판촉 분담금을 당사에 지급하는 경우 상기 표
에서 정한 분담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 23조에 근거)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
여 본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전액 가맹
점사업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사의 요청으로 인해 진행하는 개별 매장
의 판촉 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본사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본부는 모바일 쿠폰(메뉴권에만 해당)의 경우 가맹본부가 매년 합리적으로 정
한 표준 권장가로 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는 프로모션 및 비정기적으
로 제공하는 각종 홍보물, 판촉물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해줄 수 있습
니다. 단, 필수물품 사용을 준수하고 로열티 및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지급의 의
무를 성실히 지키고, 신 메뉴 취급을 꾸준히 하는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대여 및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후에 제22조(비밀준수 및 경업금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3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4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9~4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9~36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3	
가맹금 지급	- 가맹금 지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증서 제공	D-33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3~29(5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3~29(5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8~5(24일)	
개점 전 본사 교육 실시	- 개점전 본사 교육 실시/운영협의	D-7~6(2일)	
집기 반입	- 시설, 집기(가구 포함) 반입 및 세팅	D-4~3(2일)	
개점 전 매장 교육 실시	- 개점전 매장 교육 실시/초도상품입고	D-3~1(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수도권에 위치한 33㎡(약 10평) 기준의 추정 기간이며, 취급품목 및 매장위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매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귀하는 이 정보공개서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의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에 기재된 가맹금을 당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당사는 가맹법률상의 예치가맹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귀하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프랜차이즈보증보험 증서를 제공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승계 점포 지원	가맹점 승계 진행 시 매장 환경 개선	점포 승계 시	승계 오픈 전 단발성 지원	10만 원~ 30만 원 내 홍보물, 판촉물 등	비 정기사항으로 필요 판단시 진행
매출 부진 경영 지원	로열티 유예	가맹계약서 8조 4항에 해당 시	3개월 (분기별 재검토)	로열티 한시적 유예	
배달 서비스 컨설팅 지원	배달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배달 희망 매장 중 본사 컨설팅 희망 매장	배달 서비스 오픈 전까지	등록, 관리, 운영 컨설팅 제공	

- ※ 점포 승계 시 사전 협의 사항에 따라 환경 지원이 없거나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서 또는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오! 커피랩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본사 교육	회사 소개 메뉴 교육	이론/실습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매장 오픈 4일 이전	필수 교육 본사 교육장
개점 전 매장 교육	메뉴 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포스 사용	매장 교육	매장 오픈 3일전~매장 오픈 당일	오픈 포함 4일 지원
수시 교육	(신)메뉴 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매장 교육	비정기적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오! 커피랩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전 교육	5일(40시간)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협의	협의	비정기적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의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 시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 수강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확인)

개점 전 교육 이외의 정기적인 교육은 없으며, 매장 관리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교육 내용을 잘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정기교육이 진행될 경우 별도의 공지를 통해 사전에 교육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교육 불참 시 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할 경우 반드시 본사와 협의하여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직영점 수	명칭	소재지	기준일(오픈일)
1개	오! 커피랩 을지로입구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6 1층	2023. 08. 17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년,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 사항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537-829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1>

오! 커피랩 가맹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2>

원,부재료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에 관한 목록

1)전용상품(강제품목)-커피원두 포함 약 73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권장 품목 - 1)지정상품 외 약 135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3>

주요 공급 품목의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부가세 포함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